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24769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호산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구합2248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13.
판 결 선 고	2018. 8.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한칼라)는 대한모터스 주식회사(이하 '대한모터스'라고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한 회사로서, 2015. 11. 25. 대한모터스와 합병기일을 2016. 1. 31.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한모터스는 2015. 12. 4. 그 소유의 부산 연제구 연산동 822-6, 같은 동 822-123, 같은 동 822-124(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연산동 822-123 토지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41억 1,000만 원(토지 140억 원, 건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주식회사 경성리츠(이하 '경성리츠'라고 한다)와 체결하였고, 경성리츠는 대한모터스에게 같은 날 계약금 30억 원, 2015. 12. 23. 중도금 9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3. 합병등기를 마쳤고, 대한모터스는 2016. 2. 4. 흡수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6. 3. 4. 경성리츠로부터 잔금 102억 1,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경성리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위 합병으로 대한모터스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 9,024,92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5,872,410원, 지방교육세 27,074,770원, 농어촌특별세 18,049,850원, 합계 360,997,03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원고가 적격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데, 법인세법 제4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77조의2, 지방세법 제11조, 제15조,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360,997,030원은 과다하게 산출된 세액이므로 취득세 295,566,327원, 지방교육세 23,013,554원, 농어촌특별세 18,049,850원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합병법인인 원고가 피합병법인인 대한모터스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세율의 특례 및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2017.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7.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대한모터스를 합병함으로써 대한모터스가 경성리츠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계약자 지위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7조가 정한 취득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이 정한 적격합병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177조의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의4호에 따라 피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합병법인에게로 이전될 때 산출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85% 상당을 감면받거나 농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촌특별세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고,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3.5%)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1.5%)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한모터스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원고가 대한모터스를 합병한 것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착오로 취득세 감면규정 및 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채 취득세 등을 과납한 것이므로, 그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보아 적격합병의 취득세 감면이나 세율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대한모터스가 이미 위 토지를 경성리츠에 처분한 상태였고, 원고는 대한모터스의 처분행위의 이행으로 잔금을 수령하고 이와 상환으로 경성리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이를 처분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또한 계약해제의 경우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을 준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다.

(3) 원고와 대한모터스 간의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에 따른 조세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단서 및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위 합병에 적용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런데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에 관한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합병의 효력이 생기고,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데(상법 제530조, 제234조, 제235조), 이러한 승계는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경우 등기 없이도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취득세 감면 및 중과기준세율 공제 특례의 적용 여부

별지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다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의하여 감면율 100분의 85를 적용한다),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는 추징사유의 하나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의하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또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도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함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합병법인인 원고가 피합병법인인 대한모터스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대한모터스는 2014. 1. 1. 한국지엠과 부산·경남지역 쉐보레 자동차에 관한 딜러계약을 체결하고(2009년경부터 시작된 딜러계약이 수차례 갱신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토대로 자동차매매사업을 해 왔는데, 2015. 12. 31. 계약 종료를 몇 달 앞둔 2015. 8. 25. 한국지엠으로부터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해 더 이상 딜러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 결과 대한모터스는 자동차매매사업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모터스는 2013년경 그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신천지예수교회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로 39억 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할 처지에 있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모터스는 2015. 11. 25. 원고와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제10조에 "2015. 12. 31.을 기준으로 을(대한모터스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자동차매매사업부가 완전히 폐지되므로 관련 자산 및 인원 등은 합병기일 전까지 정리하고 을의 부동산사업부만 합병하는 것으로 갑(원고를 가리킨다)과 을은 합의한다."라고 정하였다. 그리고 위 합병계약 이후 대한모터스는 위 계약조항에 따라 경성리츠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이와 같이 원고는 대한모터스의 자동차매매사업부 폐지를 전제로 하여 그 나머지 사업부문만을 승계하는 것으로 위 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모터스는 합병기일 전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는 등 자동차사업부 폐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원고가 대한모터스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대한모터스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방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세율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천

판사 사경화

판사 김성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3.「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 원 이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나. 재산세: 50만 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사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④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1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끝.